

MIDT 과실 소견서

1. 사고개요

가. 사고일시 및 장소

- 1) 일시 : 2023년 7월 1일
- 2) 장소 : 파주시 동패동 심학산로384 운정신도시IPARK 게이트 앞

나. 사고관련 차량

- 1) 자차 차종 (A 차량) : 테슬라 모델Y 차량
- 2) 대차 차종 (B 차량) : 현대 아반떼 차량

다. 발생개요

A차량 우회전을 위해 2차로에서 대기 후 우회전 진행중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 정차 후 출발하던 B차량이 진로변경하면서 양 차량 충돌한 사고

라. 사고 검토 결과

고객님의 사고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차5-1 유형으로 판단 되며, A 차량에 해당합니다. 과실 비율은 **40%**로 추정됩니다.

손해보험협회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1) 직진대 우회전 사고 [차5]

신호직진대 우회전			
차5-1	(A) 우회전 (B) 직진 (가) 녹색 (나) 황색 (다) 적색		
		기본 과실비율	(가) A80 B20 (나) A40 B60 (다) A10 B90
과실비율 조정예시	① A 대우회전	+1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A 명확한 선진입	-10	
	② A 일시정지위반	+10	
	③ B 교차로내 우측으로 진로변경		+10
③ B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자전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사고발생, 손해확대와의 인과관계를 감안하여 기본 과실비율을 가(+), 감(-) 조정 가능합니다.
※舊 228 기준

출처: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비율은 법정 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블랙박스 영상 검토 결과 본 사고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차 5-1도에 해당하는 사고 유형으로 판단됩니다.

A차량 아파트 단지 입구를 나와 우회전을 위해 일정 시간 대기 후 합류할 도로 직진 신호에 5차로로 우회전을 진행하던중 A차량 기준 좌측 교차로 내에 정지선을 넘어 정차 후 출발하던 B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1항, [제25조] 5항, [제26조] 4항에서는, 모든 차량 운전자의 도로 내에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들어가는 아니되며,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정지선 뒤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사고의 A차량의 경우 합류도로 5차로로 서행을 하며 우회전을 시도하였으나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에 4차로 5차로 중간에 정차중이던 B차량이 방향지시등 점등 없이 5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주행하며 충돌한 것으로 보아 B차량이 전방에서 우회전 진행중인 A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및 도로교통법 [제5조] 1항의 지시 사항, [제25조] 5항의 지시사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녹색 신호에 직진 주행중인 B차량에 통행우선권에 있겠으나, **정지선을 넘어 지시 위반하여 교차로 내에서 방향지시등 점등 없이 진로변경한 B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다고** 판단되며, 우회전을 진행중이던 A차량이 좌측 지근거리에서 B차량을 인지하고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실도표 차5-1도를 적용, B차량에 수정요소 교차로내 우측으로 진로변경, 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지연, 중대한과실(지시 위반), A차량의 회피가능성여부 등을 적용한다면 과실비율은 A차량 40%, B차량 60%로 판단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A,B차량의 사고 전 후 위치관계, 충돌회피 가능성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3D시뮬레이션, 상세 보고서등을 제작한다면 과실산정에 있어 더욱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별도의 비용과 분석 시간이 요구되는바 실익을 판단하여 입증자료 제작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교통사고 분석사

이름: 김정민

자격번호:1-21-00991



※본 사건 과실비율 산정 근거자료

- A차량 운전자의 MIDT 사고접수 내용
- A차량 운전자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자료
- 사고당시 현장사진

별첨1_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지는 아니 된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본 소견서는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및 판결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5에 따른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근거하여 MIDT의 사고분석데이터 약 1500건을 토대로 분석된 소견서입니다. 이에, 추가적인 증거자료(CCTV, 당사자 증언, 수사기록 등)에 의해 본 소견서의 결론 및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구적인 가해자/피해자 확정 권한은 사법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